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2023.05.08.)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요 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제4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상법 시행령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